

환경관련 정부조직 및 행정체제 개편 “환경·교통·개발의 조화를 추구”

□ 비전과 목표

-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한 환경 및 개발관련 업무 통합
-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을 국토교통환경부가 균형적으로 조화

□ 주요 정책

● ‘국토교통환경부’ 설치

- 건설교통과 환경 등 정부내 국토, 교통, 환경관리 업무를 통합 신설될 ‘국토교통환경부’ 로 이관
- 국민의 ‘삶의 질’ 과 ‘정책의 지속성’ 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처로 출범

● 국토교통환경 관련 조직 재정비

- 정부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환경부 주관의 ‘국토교통환경위원회’ 를 설치하여, 국토·교통·환경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
- 국토·교통·환경 관련 정부출연기관과 공사들을 효율성 있게 재배치

● 국토교통환경부의 종합적인 장기계획으로 미래형 신국가정책인 ‘국토교통환경 2050’ 계획 추진

- 금수강산 그린웨이(green way) 구상 실현
- 2100년 해수면과 생태계 변화를 중심으로 지구온난화에 대비
- 해안선 보호와 생태형 연안환경 복원: 갯벌, 염습지, 방조제 등
- 지상수에서 지하수 중심으로 물관리 방향 전환: 지하수 남용과 오염 방지, 지하수의 양(확보량 및 사용량)과 질을 과학적으로 관리
- 자연형 하천에서 생태형 하천으로 하천관리 및 복원 방향 전환: 전국의 하천에 대한 수질관리 목표치를 2급수로 설정
-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및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수립
-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전
- 국토보전·관리를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

국민 보건환경 개선

“각종 위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건강하게 보호”

□ 비전과 목표

- 각종 화학물질과 대기 · 수질 · 공해 등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과학적으로 관리

□ 주요 정책

- **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생화학물질 사용기준과 원칙 강화**
 - ‘생활환경에관한국민건강안전기본법’을 제정, 체계적으로 관리
 - 식품안전기본법, ‘전담 수의사제도’와 ‘항생제 무사용 인증제도’ 도입
- **EU가 '07년부터 실시기로 한 화학물질관리제도(Reach System) 도입**
 - 국내 여건에 맞게 가급적 3년 내에 단계적으로 시행
- **환경호르몬(다이옥신 등) 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기준치 강화**
 - ▶ 1999년 산모 조사 평균 32pg, 미국 FDA 1일 섭취기준 0.06pg
- **유해화학물질의 유통을 지속적으로 감소**
 - 2005년 31,788톤인 유해화학물질을 1997년의 20,194톤 수준으로 감소
- **대도시 미세먼지(PM10) 오염도를 세계 주요도시 수준으로 감소**
 - 서울('03년 69 $\mu\text{g}/\text{m}^3$)을 런던 20 $\mu\text{g}/\text{m}^3$, 뉴욕 28 $\mu\text{g}/\text{m}^3$ 수준으로 개선
- **대기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고, 관리감독 · 감시기구에 민간참여 보장**
 - 오염부담이 적은 도로교통 체계 구축, 모든 교통수단에 오염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, 자전거 도로 확충
- **수돗물 관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**
 -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집수지역 생태 보전, 상수원 유기농업 적극 지원, 수도관망 관리체계 구축 추진
 - 수도권 2천만 식수원인 팔당댐 수질을 생화학적 산소요구량(BOM) 1.0mg/l 이하로 유지 (1.5mg/l: '99 → 1.1mg/l: '05)
 - 상수도 보급률(91%, '05) 및 하수도 보급률(84%, '05) 지속 개선

- 토양 오염요인인 살충제와 질소비료 사용량을 OECD 기준으로 감축
 - ▶ 살충제와 질소비료 사용량(1.20g/ha, 18.9g/ha)을 유럽평균(0.17g/ha, 5.6g/ha) 수준으로 개선
-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음수준을 감소
 - 아파트가 많은 한국적 주거현실을 고려, 소음규제 관련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설정하고, 주택건설 등 관련 제도를 정비

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“모든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보장”

□ 비전과 목표

- 식품에 대한 안전한 기준을 확립하고 철저히 관리

□ 주요 정책

- **‘식품안전부(가칭)’를 만들어 식품안전에 대한 업무를 총괄**
 - 10여개 부처와 기관으로 흩어져 있던 식품안전업무를 통합
 - 농약잔류량, 식품첨가물, 환경호르몬에 대한 과학적 관리 추진
- **식품안전망 재구축 및 법령 정비**
 - GMO(유전자변형식품) 개발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GMO 표시제도를 강화 및 확대하며, GMO 안전성 심사지침 강화 및 관리시스템 마련
 -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(HACCP)을 확대 적용
- **외국 농산물의 수입자유화 과정에서 대외 ‘생명주권’을 강력히 행사**
 - 외국 농산물에 대한 식품안전기준을 강화
 - 농산물 수입과정에서, 유해화학물질, 중금속, 광우병, 전염병 수입 우려
- **특히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·안전을 위해 안전한 식재료 공급 실현**
 - 영유아원과 초등학교 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의무화

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“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맑은 국토 창조”

□ 비전과 목표

- 경제력 규모에 걸맞게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

□ 주요 정책

- **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처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배출량을 배출량 11위인 프랑스의 수준으로 감축 추진**
 - '03년 현재 4.5억 톤을 프랑스 3.9억 톤 수준으로 개선
 -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실질적 이익 제공
- **생태계 복원을 통한 온실가스 제거 추진**
 - 도시에 공원 조성 확대와 함께, 특정생태계 서식공간인 비오톱(Biotop)을 조성
 - 개발로 제거된 면적보다 넓은 녹지를 인근에 조성하는 녹지총량제 도입
- **온실가스 저감형 도시 개발 추진**
 - 에너지 과소비를 전제로 가동하는 밀폐형 초고층아파트 신축 제한
 - 대중교통망과 자전거도로 확충, 보행자 편의의 콤팩트 도시 지향
- **굴뚝산업 위주의 경제를 친환경 위주의 산업으로 재편**
 -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0.23toe/\$1000에서 OECD 평균인 0.19toe/\$1000으로 개선 추진
- **민간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자원 발굴을 촉진**
 - 축분이나 음식쓰레기를 활용하는 바이오에너지 생산
 - 식용가능 곡물의 활용을 지양하고, 폐식용유를 활용하는 바이오디젤 등을 생산
- **지역단위 에너지소비 순환시스템 구축**

자원 재활용을 적극 확대 “쓰레기 없는 사회 구현”

□ 비전과 목표

- ‘2020년 쓰레기 발생량 zero’ 를 목표로 추진

□ 주요 정책

● 폐기물 총량제 도입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단계적으로 감축

- 2020년을 최종 목표로 단계적으로 폐기물 감량 추진
- 원자재 사용 및 폐기물 배출의 최소화를 위한 세제 및 제도 확대

● 소각 및 매립에 의한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 위험의 최소화

- 유해화학물질 배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해화학물질 주 배출원을 파악하고 저감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
- 유해화학물질(다이옥신, 중금속 등) 배출 모니터링 체계를 과학적으로 구축
 - ▶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0.1ng-TEQ/을 강화
- 소각장, 매립지의 환경영향평가 · 주변 주민건강 조사 실시
- 소각장, 매립지 주변에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시설 건립 유도
- 독성물질 관련 환경재난대처 · 보상제도 도입(미국, Super Fund 법)

● 폐기물의 재활용과 에너지화 추진

- 유기물 폐기물의 에너지 자원화, 퇴비화 지원
- 금속 폐기물의 재활용을 지원하고, 소비 자체를 줄이는 제도 개발

● 주거지역과 축사지역에 대한 완충지대 확보

- 지역 관리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관리

친환경적 지역 개발 “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지역개발 추진”

□ 비전과 목표

- 도농간 차별 없이 기본생활이 가능한 여건 조성

□ 주요 정책

●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근거 마련

-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과 이를 위한 지방행정혁신 지원
- 지속가능발전 선도 지자체를 육성하여, 한국형 지역발전 모델 확산

● “고향 복원 프로젝트” 추진

- 친환경적 농어촌형 전원주택 설계도 보급과 주택건설 지원
- 상하수도망, 천연가스망, 신개념 도로망(자동차 · 자전거 · 갯길) 도입과 마을(군면읍) 단위 대형 공원 조성
- 생태하천, 농업용 저수지, 습지 복원과 경제수림 조성
- 해양재해에 취약한 기존의 해안 돌출형 어항 대신 내륙에 수로를 건설하여 안전한 신개념의 내륙형 어항 건설
 - ▶ 도농 직거래 및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농경문화 지원

● 모든 국민의 ‘표준생활 권리’ 를 지역에도 보장

- 모든 국민에게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의 교육, 의료, 휴식 등의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농어촌지역을 집중 지원
- 현재의 보건소를 축소하는 대신 노인휴식 · 운동 · 복지센터 시설로 개조하고, 지역단위의 종합 의료원으로 통합하여 의료의 질 개선
- 병역의무의 한 형태인 사회적 복무제도를 농어촌 지역에 집중 도입하여, 농어업 생산활동과 독거 노인 수발 등을 지원
- 농어촌, 유치원, 초중등 학교의 현대화와 각 군 1개 대표 고등학교 육성추진

● 대중교통망 확충 · 정비로 교통 공백지역 해소

●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생활환경 복지형 지역 · 도시 개발

※ 새만금 유역 개발

- 기본적으로 생태계 다양성 보존과 복원을 통한 해양레저휴양도시 등으로 구성
- 여기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과 생태관광지를 포함

북한 및 동북아 지역 환경 개선 “건설적 동북아의 환경협력체계 구축”

□ 비전과 목표

- 북한 · 몽골 · 중국 산림 황폐화와 사막의 확대를 막아 한반도 · 동북아의 생태환경 보전과 황사 완화

□ 주요 정책

● 한반도 민족생태공동체의 구축

- 북한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기 한반도 종합계획을 수립
- 산림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제각기 하고 있는 북한의 산림 가꾸기 사업을 체계화
- 북한지역 숲 가꾸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기 산림경영 프로그램을 수립하고, 조림 이후 육림사업도 계획적으로 추진
- 점진적으로 북한지역의 환경문제도 고려하여 북한지역 개발

●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 접경지구의 평화공원화와 생태관광 추진

-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비무장지대를 ‘민족공원’으로, 한강하구는 ‘서해평화공원’으로 관리하고 북한과 공동 활용
- 일부 훼손구역과 사유지는 한국 National Trust를 통해 구입 관리

● 환동해 환경협력벨트 구축과 지역간 네트워크 형성

- 동북아시아연안 · 해양관리에 있어서 주도권 확보
- 남북한 교류협력확대로 한반도 연안 · 해양 공동체 구현
- 국제기구 해양협력사업 참여로 동북아에서 주도권 확보

● 지구환경문제 대한 적극적 환경외교 추진

- 기후관련 국제협약의 준수와 국제협력 강화
- 기술과 인적 · 물질 · 자원 지원을 통한 국가간 상호협력과 경험공유
- 민간 차원의 몽골 사막화 방지사업을 적극 지원

환경일자리 창출 “환경산업의 40만개 일자리 창출”

□ 비전과 목표

- 신자유주적 세계화의 폐해를 극복하고 환경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

□ 주요 정책

- 자연자원사업 투자 확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2012년까지 3만 5천개 창출
-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2020년 20% 확대로 인한 일자리 10만개 창출
- 재활용산업과 환경산업 집중 육성으로 2012년까지 총 18만 6천 여 개의 일자리 창출
- 환경보건 기반 구축 사업에 따라, 2012년까지 총 6만 5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
- ‘안심사회 정착을 위한’ 환경보건분야 기반 구축 사업 투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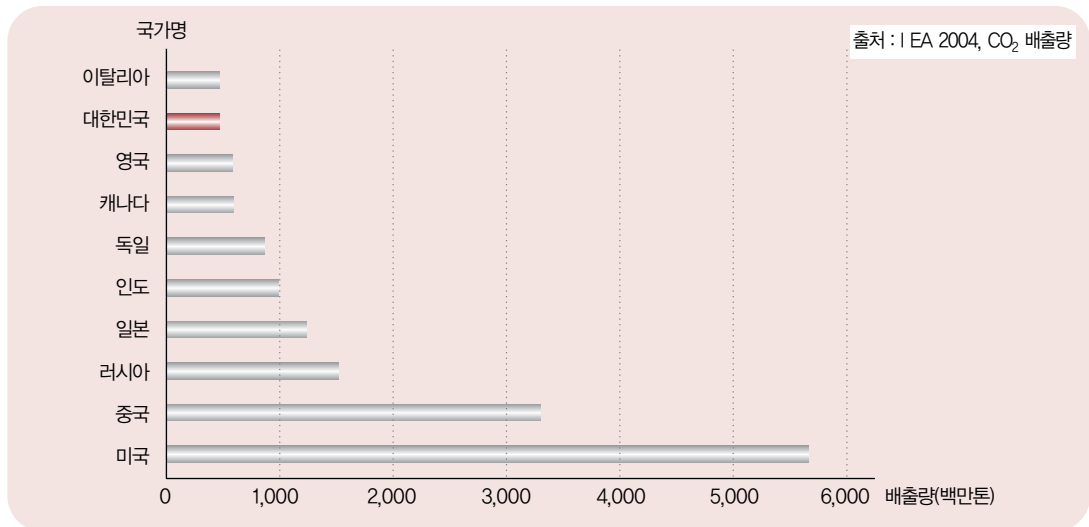
온실가스 감축 종합대책 수립

“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만반의 대비 시작”

□ 비전과 목표

●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(2002년 기준)

-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1.9% 차지하여,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임. OECD 회원국 총 배출량의 3.6%를 차지, OECD국가 중 온실가스 증가율 1위



●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 여부

-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어, 온실가스의 양적 감축을 의무화하고, 2005년 2월 16일에 발효
 - 우리나라는 제1차 의무이행기간 동안,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면제받았으나, 향후 제2차 의무이행 기간(2013-2017년)에 의무국가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됨.

●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창조적 대응

-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가 처한 위기상황
 -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21세기 국제 생명평화질서에서 위상 강화
 - 미래 환경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기후협약을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활용

□ 주요 정책

●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에 따른 충격 최소화

- 교토의정서 체제에 의해, 2013년으로 예견되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

- 기후변화방지를 위해 연도별 온실가스감축 목표설정
- 온실가스 흡수원인 삼림 조성 사업을 통한 감축
-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제도 보완 및 완비

● **미래 에너지시장 선점의 계기로 삼기**

- 미래 에너지시장 선점과,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 계기
- 온실가스저감 기술 개발과 적용

● **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총체적 대응 방법으로, 국가종합계획수립 및 추진기구 구성**

- 종합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작성
- (가칭)한국 기후변화방지위원회 설치 운영

대형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대선 공약 금지

“대형개발은 성실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”


□ 비전과 목표

- 새만금 개발 사업(노태우 후보 공약, 1987), 행정수도 이전(노무현 공약, 2002), 사례처럼 대규모 국토 개발사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금지
- 대규모 환경파괴는 물론 환경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대형 국토개발사업 시행 과정에, 객관적인 조사, 합리적인 토론, 사회적 합의 등의 민주적 절차 마련
 - 환경파괴와 사회갈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 최소화

□ 주요 정책

- (가칭) 국책사업관리법을 제정하여, 미래세대 자산(생태자산)에 현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국토개발에 관한 국책사업 시행시 민주적 합의절차 규정
- 대형 국토개발에 관한 국책사업 중, 정치 후보자의 재임기간(대통령 5년)내에 완료되지 않을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공약을 금지
- 국토개발에 관한 사업 중에서, 재임기간내의 사업에 대한 공약 사업은 허용하되,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‘공약사업의 정책성과평가제’를 도입
 - 공약한 사안이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경제적 · 환경적 · 사회적 성과 평가를 실시
- 모든 국책사업은 민주적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
 - 그 절차는 1) 사업의 사회적 수요 합의, 2) 시설물 입지 단계에서의 주민 합의, 3) 시행 전 단계에서의 주민 검증 가능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시행 등 3단계화
 - 사업의 탄생 단계에서부터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

에너지*

 “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
지속가능한 대안을 실천하겠습니다”

다각적 에너지 절감대책 추진 “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지향”

□ 비전과 목표

- 미국, 일본 등과 같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추진
- 점진적으로 GDP 중 서비스업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비중을 낮춰 에너지원단위를 저감

□ 주요 정책

- 에너지 고효율화 및 저감기술 연구개발을 확대
- 고부가가치-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
-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 개선 추진
 - 에너지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(VA)/이행 의무 부여
 - 산업체의 에너지 재활용과 산업에너지 효율화 유도
 - 가전, 조명기기,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 증가 유도
 -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자연광 조명이 가능한 건물과 주택 건설

교통 에너지환경세를 환경세로 전환 “민생과 환경을 모두 고려”

□ 비전과 목표

- 고유가시대를 맞아 유가가 사회적 양극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개선할 대책 마련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유류세별 사용용도(휘발유의 경우)

출처 : 환경정의(2007.7.16)

유류세 구성	사용 용도
교통에너지환경세	교통시설특별회계(80%)
	환경개선특별회계(15%)
	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(3%)
	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(2%)
교육세(교통세의 15%)	교육지원목적에 사용(100%)
주행세(교통세의 26.5%) 부가가치세	버스, 화물차(경유), 택시(LPG) 지원(70%) 지방재정 보전(30%)
(공장도가격+유류세+유통마진)×0.1	일반회계로 전입

- 석유류 세수 규모는 '06년 기준, 25.9조원에 달하여 국세 중 약 19%를 점유
-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1.61달러('06년 4/4)로 OECD 국가들 중에서 다소 높은 편에 속하나, 세금 비중은 57.6%로 거의 중간에 위치
- 휘발유 가격을 구매력평가(PPP; Purchasing Power Parities) 환율 기준으로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
 - PPP기준 미국의 2.9배, 일본의 1.9배, 영국 및 독일의 1.4배
 - 시장환율기준 미국의 2.1배, 일본의 1.3배, 영국 및 독일의 0.9배

□ 주요 정책

● **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경세로 전환**

- 유류세는 당초 2003년까지 한시적 목적세이므로 국 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폐지후 국민과의 합의를 거쳐 환경세로 재조정
- 대중교통활성화, 대기오염 개선 및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 확대 등 환경개선사업에만 투입
- 세율, 유통 및 정제 마진 등을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국민경제 부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

● **교통에너지환경세의 주요 구성항목인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도로건설부분 예산안은 감축**

- 2006년 유류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10조 8백억 원
- 불필요한 도로 공사 등에 사용되는 비용 대폭 감축

● **한시적 유가 인하**

- 유가가 일정수준, 예컨대 배럴당 100불 이상으로 폭등할 경우 서민경제와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0% 인하

해외 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 안정적 확보 “맞춤형 해외자원개발 확대”

□ 비전과 목표

- 원유탐사권 획득 등 지속적으로 해외 유전을 개발
 - '06년까지 석유·가스의 누적확보 잠재 매장량은 140억 배럴, 이중 63%인 88억 배럴이 지난 3년간 확보
- 주요 경쟁국 수준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
 - ※ 미국은 원전건설 적극지원, 일본은 원자력입국계획 발표, 스웨덴은 '반원전 정책' 재검토

□ 주요 정책

- 민간자금 유인책 활성화를 통한 투자자금 확대
- 인력·기술·정보 등 해외자원개발 인프라 확충
- 지역별, 광종별 맞춤형 자원개발 전략 수립

신·재생 에너지개발 및 보급 확대 “신·재생 에너지의 전략적 개발 강화”

□ 비전과 목표

-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진전략을 강화하되 1차 에너지소비 중 신·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술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재조정
 - 당초 정부 목표인 “2011년까지 5%”는 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조정 불가피
 - 태양광의 설비단가는 화력발전의 약 8.5배, 풍력은 약 1.5배 수준
-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수소비중을 '40년까지 15%로, 수송차량의 50%를 연료전지 차량으로 대체 추진
 - 수소제조용 연료의 60%를 신·재생에너지로 공급

□ 주요 정책

- **경제성과 미래지향성을 고려, 보급 목표를 설정·추진**
 - 타당하고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전문가 검토
- **목질계 바이오매스의 활용 적극 추진**
 - 연간 318만 톤에 달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활용 방안 마련
 - 바이오디젤, 바이오에탄올 등 수송용 바이오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부처간 협의체 구성
- **신재생 에너지 보급 적극 추진**
 - 행정복합도시 및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
 -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·재생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한 할당(Green Pricing) 제도 도입 추진
 - 기초수요확보를 위한 발전차액 보전제도를 활성화해 신·재생에너지 보급 촉진
 - 점진적으로 경쟁적 전력시장인 신·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(RPS : Renewable Portfolio Standard) 추진

동북아 및 남북 에너지 협력의 추진 “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상과 병행”

□ 비전과 목표

-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한 동북아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한 에너지 협력 추진
- 에너지 협력을 위한 최상의 지정학적 여건 활용
 - 역내에 막대한 자원(러시아, 몽골 등)과 대규모 시장(한국, 일본, 중국)이 공존

□ 주요 정책

● 동북아 협력 추진

- 단기적으로는 정부간 협의회 활성화에 의한 협력여건 조성 및 유망 협력사업 프로젝트 개발 추진
- 장기적으로는 국가간 에너지 안보협력을 강화

● 남북 협력 추진

- 단기적으로는 설비현대화 시범사업, 구상무역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
 - ▶ 광산물 등으로 투자비를 간접 회수하는 방안 검토
- 발전소, 석탄광 현대화 시범사업 협력 추진
-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연계
- 남북 에너지시스템의 기술적 특성 및 설비사양의 점진적 통일 추진

양극화 해소를 위한 에너지 복지 확충 “에너지 빈곤층 완전 해소”


□ 비전과 목표

- 2016까지 에너지 빈곤층을 완전히 해소
 - 최저에너지(광열비기준)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% 이상인 에너지 빈곤층이 '05년 120만 가구로 추정
-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비수급 저소득층으로 지원 확대
 - 가격보조 지원방안을 개선하고, 정부와 에너지 공급자간 중복지원 문제 해결

□ 주요 정책

-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 보급을 확대
 - 지방 중소도시 등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
-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에너지 가격구조 정비
 - 정부, 에너지공급자 및 민간이 참여하는 복지 네트워크 구축
-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및 환경개선
 - 고효율기기 보급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 촉진

농림 · 해양*

 “국민과 함께하는 살맛나는 농산어촌을
창조하겠습니다”

상생의 농업·농촌 정책 추진 “서로 살리는 상생으로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창조”

□ 현안 진단

“도·농간의 균형발전 없이, 농림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산어촌 지역의 진흥 없이,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. 선진국의 기본조건은 농산어촌민과 도시민이 상생하고 순환하는 것입니다.”

- 농업·농촌에 대한 인식의 전환
 - 농업농촌의 비중은 낮아지지만 그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는 데 주목해야함
 -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
 - 국토 및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보전
 -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풍요로운 생활공간의 조성
- 새로운 농정 이념 - 지속가능한 순환 농정
 - 농업·지역·환경·문화를 포괄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해야함
 - 서로 살리는 상생의 농정과 이어지고 지속 가능한 순환의 농정이 요구됨
- 분권과 자치를 통한 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주민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가 요구됨

□ 비전과 전략

“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, 농민의 생활권을 보장해야 하며, 이를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상생과 순환의 농촌공동체를 이룩해야 합니다.”

-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의 보장
 -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(먹을거리 기본권)에 속하고, 국가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
- 농민의 생활권 보장
 - 대한민국 헌법 10조(행복 추구권), 34조(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) 기초하여 농산어촌 주민은 도시민 못지않은 경제적 소득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, 보건의료, 주거, 교육, 문화 등 인간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고, 국가는 이것을 보장할 의무 존재

● 상생과 순환의 농촌공동체 만들기(협치 시스템)

- 살맛나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순환, 농민끼리 서로 협동하는 농민 상생, 경제활동의 성과가 지역 내에 귀속하는 경제 순환,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자연 순환이 필요함

□ 주요 정책

● 농정 패러다임의 혁신

- WTO체제 출범 이후 우리나라 농정은 ‘국제경쟁력 있는 농업의 육성’이라는 경쟁력 지상주의에 경도, 그러나 이것은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것임
-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구조개선정책은 농업경영의 규모화와 생산성의 향상에는 기여하였지만, 농촌문제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음
- 생산성 제일주의라는 좁은 이념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
 - 따라서 농정이념을 효율주의의 좁은 틀을 벗어나 지역주의와 환경주의 이념을 강화하여 농업·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혁신하여야 함
 - 또한, 농산물(생산자)의 국제 경쟁력을 중심에 두는 이념에서 국민전체 식생활의 안정성, 안전성, 건전성을 중시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
- 농정이념의 혁신과 더불어 농정의 대상과 범위도 확대되어야 함
 - 이를 위해서는 농정의 대상을 부문(sector)에서 지역(territory)으로 전환
- 농정은 서로 개성을 달리하는 개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지역일 수밖에 없음
 - 가격정책이나 소득정책 등 전통적인 농업정책으로부터 농정의 대상이 농업구조의 개선, 환경보전이나 농촌 지역 활성화로 확대되면 될수록 중앙집권적 농정으로부터 지방분권적 농정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

● 제도 혁신

- 농업농촌식품기본법 제정
 - 농정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농정기조와 시책을 담은 새로운 기본법의 제정
 - 농업농촌과 소비자 국민이 함께 상생하고, 농업농촌과 국민경제 그리고 한국사회 전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농정 비전과 장기발전계획을 도출하고, 이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담은 농업농촌 식품기본법을 새로 제정
- 농정 거버넌스의 혁신
 - 중앙차원의 수평적 농정 거버넌스
 -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 농정 거버넌스
 - 로컬 거버넌스: 농업회의소 설치

- 시군단위 “주민의 삶의 질 서비스 센터(또는 지역활성화 센터)” 설립
 - 행정기관, 현장활동가(시민단체), 연구기관(전문가) 협력 시스템 구축
 - 주민고용, 주민출자, 지자체 지원 등에 의해 문화, 의료 등 사회적 서비스 관련 제공
 - 유급/상근/정규직 체계를 통한 현장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행자부 공무원 관련 법률 개정

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의 보장 “안전·안심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”

□ 비전과 목표

- 적정 식량자급률 및 식품 공급능력 확보
-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게 보장
- 패스트푸드 시대가 아니라 슬로우푸드 시대에 대비

□ 주요 정책

- **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을 법제화하고 이를 각종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정책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제도화**
 -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자급률 제고
 -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국가적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구축
 - 국가 차원의 건전한 식생활 정보와 교육 제공
- **농정의 이념과 목표를 ‘생산성 제일주의, 효율제일주의’에서 ‘지역주의와 환경주의’로 변경**
 - 농정의 범위를 농업과 농업인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공급, 환경보전과 농촌지역 진흥 등 소비자를 포함한 국민 전체로 확대
- **단체 급식의 국산 농수축산식품 지원과 저소득층 식비보조 확충으로 소비 확대**
 - 지역 먹을거리체계(로컬푸드 시스템) 확립
 - 국내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

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“소득은 두 배, 부채는 반으로, 생활은 살맛나게”

□ 비전과 목표

-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국가의 의무로서 보장
 - 도시민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적 소득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, 보건의료, 주거, 교육, 문화 등 인간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서비스 보장
- “소득은 2배, 부채는 반으로, 생활은 살맛나게” 전환
 -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통해 농어촌 선진화 달성

□ 주요 정책

- **직접 지불제의 확대와 다양화**
 - 다른 나라에 비해 농가소득 중에 현저히 낮은 직접지불의 비중을 대폭 확대
 - 환경보전 지불제, 경관보전 지불제 등 지불제를 다양화
- **농외소득 기회의 확대 및 농가소득의 획기적인 개선**
 -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과 도농교류를 확대
 - 농산물 가공 및 유통, 새로운 소기업의 창출, 전통산업의 활성화, 환경친화적 기업의 유치
- **정부 책임 하에 부채의 대폭 경감**
 - 『농가경영 및 생활실태조사위원회』를 가동하여,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부채 실태 특별 조사
 - 정부자금(정책금융)과 농협자금(상호금융자금과 중앙회 자금)에 대하여 이자 면제, 상환유예, 장기 분할상환 등 종합대책을 마련, 당면 부채압박의 고통을 조기 해소하는 조치 단행

남북농업 협력 강화

“상생의 한반도 농업공동체 시대 개막”

□ 비전과 목표

- 남북간 노동력, 기술, 자본, 토지 등의 결합을 통해 농업 생산·자재·가공·유통·무역 분야에서 협력
- 남북 공동식량계획(Common Food Program) 및 남북 공동농업정책(Common Agricultural Policy)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남북 농업공동체를 실현

□ 주요 정책

- 북한 농업생산력이 일정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대북 식량지원을 하여 상생의 한반도 농업공동체 시대 대비
- 북한 농업재건을 위한 국제협력기구로서 ‘한반도농업개발기구’(KADO) 설치
- 남북간 농업협력을 위한 남북농업협력기구도 설치
- 북한의 주요 농업지대에 ‘남북농업협력특구’를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남북 농업 경제공동체를 실현

농정 추진체계의 개혁 “농어업인이 주인이 되는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”

□ 비전과 목표

- 중앙 설계주의 농정을 극복하고 분권과 참여의 농정을 실현
- 정부와 농업단체, 소비자 단체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정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농정에 반영
- 농어촌 주체역량 강화법을 제정하고 농어촌진흥·리더십 개발센터를 설립하여 농업농촌을 이끌어 나갈 인적 자원의 혁신을 도모

□ 주요 정책

- **대통령 직속으로 농업농촌식품위원회를 두어 농업·농촌·식품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관련정책 조정**
- 농촌영향평가제도(rural proofing)를 도입 운영
- **농정과 관련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, 국가 보조금의 폐지·감축과 포괄보조금화를 추진하며, 지방농정국(가칭)을 신설하여 국가사무를 직접 집행**
- **중앙농정 및 지역농정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농업인이 참여**
-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을 도모하는 범농업계의 대표적 자조조직으로서 농업회의소 설치를 지원
- **농협중앙회 개혁의 조속한 완료 추진**
-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통한 중앙회 개혁을 추진
- 지역농협 개혁을 통해 생산-가공-유통 관련 지역농업 조직화의 주체로 육성
- **지역의 주체역량 강화와 농촌개발 인력 육성을 지원할 전담기관으로서 ‘농촌진흥 및 리더십 개발센터’를 설립**
-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지원 보장

해양 2050 정책 추진 “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”

□ 비전과 목표

- 우리의 바다를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명의 바다,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전환
- 쾌적하고 건강한 해양환경, 경제·균형·분배(Equity)의 조화에 기초한 합리적 이용·개발체계를 구축
- 2100년 우리 해양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예측에 근거해 해양정책을 수립하는 등 장기적 정책 추진

□ 주요 정책

● 연안·해양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

- 연안·해양의 통합적 관리 및 환경관리를 위한 통합부서 설립
- 정부와 민간영역간 협력 강화 및 선진 관리프로세스 도입
- 이원화된 연안해역 수질환경 관리 체제 개선

● 해양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100년 해안선 변화에 기초한 신개념 해안공간을 창출하여 국내에 적용

-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전 세계 평균(2.8~3.1mm/년)보다 1.5~2배 높은(5.4~6.6mm/년) 해안침식과 침수방지
- 자연해안·서식지 손실방지제도 도입

● 해양주권의 확립


- 배타적 경제수역(EEZ) 및 대륙붕의 효율적 관리
- 국가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대응체계 정비
- 국제기구의 해양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주도권 확보

● 연안·도서지역의 삶의 질 개선 및 신해양에너지 기술 개발

- 전 연안의 해수를 1급수를 목표로 유지 관리
- 항구 내의 수질관리 및 법규 보완
- 해양환경의 훼손이 없는 신재생 해양에너지 기술개발·응용 지원

- 발전소 온배수 및 연안오염물질 배출 관리체제 확립과 영향 해역의 지역활성화 방안 수립
- 생물종다양성 보전 및 자원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 도입
- 지속가능발전 토대 강화를 위해 정책통합과 참여의 해양 거버넌스 구축

사법 · 인권*

 “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, 인권이 존중되는
사회를 만들겠습니다”

올바른 로스쿨 정책 추진 “법전문가를 대거 양성하여 저렴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대”

□ 비전과 목표

-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, 그리고 인권감수성으로 무장한 법전문가 양성기관
- 고시열풍으로 인한 인재활용의 비효율 극복
- 종래 소수대학이 독과점해온 법조인배출구조의 민주화
- 변호사가 없는 마을(무변촌) 해소
- 일반시민의 권익구제가 손쉬워지는 국민친화적 사법서비스체계 구축
- 기업의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무수요 충족에 필요한 특화분야의 법전문가 양성
- 국가기관, 공익법인, 사기업에 상근 법전문가 공급을 확대해서 법치주의 강화

□ 주요 정책

- **로스쿨 총정원 3천명 이상으로 확대**
 - 법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법서비스 수거하락을 위해 필요함
 - 국가와 사회 구석구석에 법전문가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함
- **정원의 20%는 기회균등 선발**
 - 특화된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적 약자층이 법조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기회제공
- **로스쿨 등록금 부담 경감**
 - 국가는 저소득층 자녀의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
- **장학금 혜택과 연계한 공공변호사제 도입**
 - 국가나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법조인으로 성장하면 일정기간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에서 공익서비스 활동을 하도록 함
 - 특히 이들로 하여금 소액민사소송 등 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해서 민생을 살피도록 함

개인정보 보호 강화

“투명한 햇볕정부를 위한 알권리 보장 강화와 정보사회 대비”

□ 비전과 목표

- 알권리 보장강화로 투명한 햇볕정부 지향
- 개인정보 보호강화로 정보사회의 인권위협을 제거하여 정보사회의 지속발전 지원
-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인정하는 핵심 인권
-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기관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간이신속 구제절차 신설
- 정보공개 예외범주 명확화와 정보공개범위 확대
-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정보인권 대폭 강화
-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전담기구 신설

□ 주요 정책

- **정보공개제도의 확대 (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)**
 - 비공개 대상정보 축소: 현행 비공개대상정보 조항(법 제9조)의 불명확성을 제거
 - 원본정보 공개 원칙: 무분별한 공공기관의 임의적 정보 가공· 요약 억제
 - 청구인의 부담 완화: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일 때 비용 감면
- **비공개처분에 대한 간이신속 구제절차 신설 (정보공개법 개정)**
 - 정보공개위원회에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권한 부여
 - 간이신속 구제 및 공개기준 정립으로 알권리 실질보장
- **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**
 - 현재는 공사부문을 망라한 통일적인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없음
 -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청구권 등 정보인권의 강화
 - 공사부문의 개인정보위협, 특히 대량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규제강화
 -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, 이용을 규제
 - e-메일 수집기 같은 자동화된 정보수집장치 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사전고지의무 부과
 - 정보주체의 열람, 정정청구권 등을 보장

경찰 개혁 “국민 속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”

□ 비전과 목표

- 국민에게 친근하고 인권보장에 충실한 민중의 지팡이
- 민생범죄와 치안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질서의 보호자
- 경찰활동에 대해 대국민 반응책임과 설명책임을 지는 책임경찰
- 막강한 정보력과 거대 인원을 가진 경찰조직의 혁신
- 경찰의 수사권을 현실에 맞게 인정하되, 검찰의 통제권한도 유지
- 경찰의 관료주의 타파와 부패 예방

□ 주요 정책

● 경찰의 수사권 허용 (형사소송법 개정)

- 경찰의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허용
- 검경관계를 상명하복관계에서 상호 협력과 견제의 대등관계로 전환
-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, 수사종결권, 자체수사권, 경찰의 전건송치의무 허용
- 위에 열거한 검찰의 사후통제권한을 유지하여 경찰의 수사권 남용 억제

● 지방경찰제도 확대 (지방경찰법 신설)

-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
-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 지방경찰제도 도입
- 현재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지방경찰제도를 전국으로 확대

● 경찰대학 폐지 (경찰대학 폐지법안)

- 경찰의 학력수준 향상 및 경찰관련 학과의 급증으로 경찰대 설립취지 퇴색
- 경찰대를 폐지해 경찰 내부의 특권화된 영역을 없앴

● 전의경제도 조기 폐지

- 현재 2012년까지 단계적 폐지가 예정된 전의경제도 폐지를 가속화
- 전의경 폐지로 인한 치안공백은 정규경찰 신규채용으로 충당
-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경찰순경의 배정 임용제도 폐지
- 병역의무자가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대간첩작전 전투경찰, 순경으로 전환복무

군인 인권보장

“인권이 살아 숨 쉬는 병영문화 정착”

□ 비전과 목표

- 군인에 대한 인식을 ‘제복 입은 시민’으로 전환
- 구타, 폭행, 폭언,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운 민주적인 군대상(像) 구현
- 군사법제도 개혁

□ 주요 정책

● 군인기본법 제정

- 군인지위를 법률로 제정하여 권리·의무관계를 명확히 함
- 군인의 인권보장과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 명시
- 군 내부의 뿌리 깊은 각종 차별관행 근절의지 명시

● 인권위에 대한 군인의 자유로운 비밀진정권 보장

- 군인사법상 군생활관련 외부 불만고충은 반드시 직상급자를 거치도록 돼 있음
-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군인의 비밀진정권을 보장함
- 현실에서는 군인사법 우선으로 군사병의 인권침해 진정이 거의 없음.
- 따라서 군인사법의 외부진정제한규정의 예외로 국가인권위에 대한 진정을 명시

● 국가인권위원회에 병영시설 방문조사권 부여

- 현재 국가인권위는 군내무반 등 병영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권한을 갖고 있지 못함
- 병영시설 내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침해요인을 제거하는 등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의 병영시설 방문조사권한이 반드시 필요함

●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지휘관 확인권 폐지

- 군사법제도를 이른바 ‘사단장 사법’으로 전락시킨 군사법 과정의 지휘관 확인 및 기타 개입권한을 헌법상의 3권분립 원칙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폐지

● 군지휘관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

- 사관생도, 학군장교후보생, 각급 군사학교의 교과과정에 부대지휘 및 작전수행 시 인권보장에 필요한 인권감수성 교육 등 인권교육 실시
- PKO 등 군사활동 중 인권침해소지가 없도록 국제형사재판소법, 국제인도법 교육

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 “최고수준의 정신의료와 환자인권보호”

□ 비전과 목표

- 최고수준의 정신의료 제공으로 국민의 정신보건 증진
- 정신병원 입원환자와 정신요양시설 수용인의 인권보장을 강화
-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을 감소와 입원기간 단축
-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 지원
- 세계 2위의 자살을 저하

□ 주요 정책

- **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제도 개혁**
 - 현재 강제입원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피해가 심각
 -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의 진단만으로 가능한 강제입원과정에 법원이나 정신보건전문기구 등 독립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제를 정비
- **정신보건법 전면개정**
 - UN과 WHO의 정신장애인권 국제규범에 맞게 정신보건법 개정추진
- **정신보건전문연구기관 설립**
 - 정신보건법 시행 10년째 법정 정신보건전문연구기관 미설치
 - 이는 정부의 중대한 범위반이자 직무유기임
 - 최고수준의 전문연구기관을 지체 없이 설립
 - 우리사회 정신보건 실태파악과 정책대안 모색에 만전
- **지역사회 통합형 사회복귀시설과 재활시설 증설**
 - 사회복귀시설 부족이 강제입원기간 장기화의 큰 이유
 - 정신보건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파악 후 사회복귀시설 증설
- **정신보건 증진과 정신보건 법제개혁을 위한 대통령 TF 구성**
 - 정신보건부문은 인권적 관점에서 가장 낙후한 분야임
 - OECD 평균과 비교하여 강제입원율이 너무 높고 입원 기간이 너무 장기간임

- 인권보장과 법치주의, 그리고 효과적인 정신의료와 사회복귀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신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게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야 함.
- 선진국 법제와 국제규범을 광범위하게 연구·조사하여 종합적 정신보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법규와 제도관행의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정비 추진

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 “시설생활인의 사회적 통합추진”

□ 비전과 목표

- 인권사각지대에서 격리·방치되어 온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
- 중장기적으로는 인권보호를 위해 탈시설화와 지역사회통합 추진
- 복지법인과 시설의 부패비리 통제강화로 인권보장의 물질적 토대 강화

□ 주요 정책

● 시설생활인인권법 제정

- 자유로운 입·퇴소권, 일반적 행동자유권, 인간적 처우권, 외부교통권, 프라이버시권, 의료건강권, 평등처우권, 적법징계절차 등 시설생활인의 인권목록을 상세하게 규정
- 시설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존중 의무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 명시
- 시설서비스의 최소기준 법제화로 사회적 기본권 보장
- 인권침해 시 단속·제재·벌칙 규정

● 탈시설-지역중심의 자립생활 지원

- 격리생활형 시설개념을 지역사회 내 주거복지개념으로 전환
- 활동보조인 제도화
- 성년후견제의 도입
- 기존시설의 소규모 그룹홈(home)화 지원
- 기존시설에 대해 자립생활 지원기능 의무화

● 사회복지생활시설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

- 시설인권보장과 운영투명성보장을 위한 감독과 단속 강화
- 모든 생활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방문조사 주기화 및 활성화
- 인권보장여부에 따른 보호단가의 차등지원
- 공법상 계약제도의 도입과 공익이사제 도입 등 시설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

인권외교 강화

“인권옹호대사 임명 등으로 적극적 인권외교를 추진”


□ 비전과 목표

-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도적인 인권국가
- 아태지역 인권문제 해결에 기여
- 유엔, OECD, ASEM, APEC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역할과 이미지 제고

□ 주요 정책

- **중요분야별로 국제인권옹호대사 운영**
 - 과거에는 국내인권방어대사의 성격을 가졌음
 -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이 축적된 분야에서 국제인권옹호대사
 - 예컨대 과거청산, 국가인권기구, 자유권분야, 차별금지 등
- **개발원조기금 확대와 인권지원활동 강화**
 - 개발원조기금의 뒷받침을 받아 수혜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· 강화 지원
 - 개발원조기금의 뒷받침을 받아 수혜국의 인권단체 지원
 - KOICA의 국제활동 중 인권옹호활동 강화
- **국가인권위와 국내 인권단체들의 국제인권활동 지원**
 - 국가인권위의 국제협력활동 예산 지원
 - 국내 인권단체들의 해외활동 지원

정부 재창조*

 “창조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
사람입국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”

정부 조직과 기능의 재창조 “정부 재창조를 통해 고성과 정부 구현”

□ 비전과 목표

- 산업·경제 분야에서의 작은 정부, 사회복지·교육 분야에서의 큰 정부를 구현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적 교육 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
- ‘재벌중심-건설중심의 개발형’에서 ‘사람중심-중소기업중심의 지식형’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여, 정부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향상
- OECD 국가들이 지난 20년간 수행한 정부현대화(Modernizing Government) 프로젝트를 활용,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고객중심적인 정부를 구축

□ 주요 정책

- **경제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약 30%에서 향후 5년 내 25% 이내로 감소 시켜 약 10조원 재원 절약**
 -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추세에 맞게, 민간이 경제부문을 주도하고 정부는 정책지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
 - 관련 경제산업조직은 분권화, 기관책임 운영제, 민영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재조정
- **학교교육, 평생교육, 여성·보육·노인 복지 등 사회교육복지부문은 지속적으로 확대**
- **정부의 산업경제분야 축소시 인력을 재훈련시켜 사회복지, 교육, 문화 분야로 우선적으로 재배치하고 사회서비스 인력을 확충**
 - 경제산업분야 행정직 공무원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, 소방·보건·의료 등 복지분야공무원은 증원
- **정부기능 및 조직을大部처 체제로 개편으로 고성과 정부 구현**
 - 정부의 산업경제부처간 유사 중복조직을 정비
 - 총리제를 부통령제로 전환
 - 국가전략기획원 및 중소기업부 신설
 -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는 국토교통환경부로 통합
 - 노동부 및 교육부는 평생학습부로 통합

- **고시제 폐지와 개방형 인사제 확대로 민간 전문가의 공직진출 확대**
 - 직위공모제, 다면평가제, 고위공무원단제를 확대운영
- **정책연구직 공무원제의 신설**
 -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전문인력 활용
 - 일반 공무원의 기업체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한 파견근무도 확대
- **국민들을 지역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출하여 “국민평가단”을 구성하고 이들을 통해 정책 평가 및 부처 평가 실시**
 - 각 부처 · 부서의 인사고과와 성과금 등을 국민평가와 연계
- **주민의 행정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 운영**
 - 예산을 만원 단위로 표현해 쉽게 알 수 있는 ‘만원예산제’ 도입
 - 예산 전 과정을 주민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‘참여예산제’ 도입
 - 자치단체와 의회에 대한 주민 감시와 참여가 가능하도록 주요시안은 야간에 개최되는 의회에서 결정

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축 “전자정부를 통해 부패를 청산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보장”

□ 비전과 목표

- 세계최고의 IT역량을 투명성제고의 핵심인프라로 활용
- 전자정부의 핵심인 정보공개와 정보공유를 촉진하여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, 부패를 원천 봉쇄
- 현재 40위권에 있는 국제 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도 지수 순위를 15위 수준으로 향상
- 정부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자원을 관리하는 공무원 개인이나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, 정부에 대한 신뢰향상
- 정보 공개 활성화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제공

□ 주요 정책

- 업무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,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
- 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, 평가시스템 등을 연계 구축하여 업무의 결과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평가
 - 업무절차를 표준화 · 간소화시켜 재량행위를 축소
- 조달시스템, 인터넷 민원공개시스템 등 부패방지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시스템의 이용을 활성화
 - 서비스 · 수수료 · 세금 납부 등 금전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부패 가능성 원천 봉쇄
- 법정부적인 차원에서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재정 투명성 강화
- 국가 통합재정통계를 인터넷에 공개하여, 재정집행의 투명도를 높이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의 국정참여 폭 확대
- 투명성과 부패정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경쟁 유도
- 공개 문서와 비공개 문서를 구분하고 비공개 문서를 최소화하며, 예산 집행 항목 중 비공개 항목을 최소화
 - 채택된 정책의 의견 수렴과정과 정책 결정 참여자의 사후 공개를 제도화하여 정책 결정의 책임성 확보

국가 재정제도 혁신과 예산배분 효율화 “재정제도의 혁신을 통해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향상”

□ 비전과 목표

- 시장기능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
- 증가하는 재정 지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여 미래의 재정 위험발생 가능성을 최소화
- 예산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작은 예산으로 더 많은 성과 창출
-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

□ 주요 정책

- 교육·문화·사회복지·환경 등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확보 및 예산배분 확대
- 재원과 재정을 통일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
- 재정적자의 적정수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감시·분석
- 큰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예산사업에 대해 시범사업 실시와 성과평가를 의무화하여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 본격 투입
- 신정부 초기에 전 부처 차원의 예산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10% 예산 절감 및 예산사업 구조 조정
- 일자리 창출 효과대비 정부재정사업의 효율성을 평가

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 정착

“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정착”

□ 비전과 목표

- 지방자치단체가 장차 지방정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대폭 확대
-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확립

□ 주요 정책

● 지방자치 관련 법 개정

- 지방분권 특별법(한시법)의 개정 혹은 연장
- 자치입법권의 강화(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 삭제 등)
- 법률적 성격의 조례 일부 도입 (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규정 강화)

● 행정구역·자치구역 조정

- 행정편의 위주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
- 생활권 중심으로 광역·기초 행정구역 조정
- 중대선거구에 맞게 선거구를 조정

● 광역정당 창설 등 정치분권화 추진

- ‘정치분권화 없는 지방자치’의 한계를 극복
- 정당의 중앙 집중화 해소 및 정당의 지방화 추진
- 정당법을 개정: 5개 이상의 시·도당 요건 폐지
-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개선(정당공천제 폐지 등)

● 각 부문별 지방자치의 지속적 확대

- 국가사무, 지방사무(광역/기초 자치단체) 구분체계 정비
- 재정분권의 지속적 추진
- 교육자치를 위한 제도개선: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의 연계성 강화
- 자치경찰제의 도입
- 복지정책 관련 중앙과 지방간 재정분담 개선
- 지방정부 감사체계의 개선(지방감사위원회, 국정감사예의 참여 등)
-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적 연계
- 지방의회 행정인력/지방전문직 공무원 확대
- 지역사회 자치제도의 개선(자치위원, 주민자치센터 등의 기능강화)
- 특별 지방행정기관 정비

세계화와 지방화로 지역 재창조 “지방의 세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”

□ 비전과 목표

- 지역별로 일자리, 교육, 환경을 통한 사람중심의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강화
 -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과 지방대학의 혁신을 연계하고 농산어촌과 도시간 순환체제를 강화
- 국제경쟁력 관점에서 지방경쟁력을 강화

□ 주요 정책

- 전국을 6대 초광역 클러스터로 나누어 각 지역 산업과 기업의 특성에 기반하여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‘세계적 지방화’ 추진
 - 중앙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권한 가운데 지방분권화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의 정비 및 개편 추진
- 농산어촌의 경제적, 문화적, 환경적 가치를 제고하여 도시와 공간적으로는 유기적 지역경제, 개인생애적으로는 순환적 체계를 조성
- 지역의 교육자치를 확대하여 개성 있는 학교교육을 통해 수도권과 도시의 인재들이 지방과 농산어촌으로 역류하도록 지원
 - 한계상황인 지방의 4년제/2년제 대학들을 중소기업 현장기술자를 집중 육성하도록 산학연계형으로 혁신
- 지역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 : 지역가치(어메니티)를 고려한 지역발전 모델 개발
- 대학의 해외 및 향토지역학 육성을 통해 지역(시민, 기업, 지자체 등)의 글로벌화 역량 강화
 - 해외지역학과 향토지역학을 경영학, 인문학, 사회과학의 융복합과정으로 운영하여 활성화하고 대학에 관련 데이터베이스(DB) 구축

공기업 책임성 강화와 효율성 향상 “공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과 지배구조의 개선 추진”

□ 비전과 목표

- 공기업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없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기여
- 공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여 성과주의 경영을 실현
- 공기업의 지배구조 공개를 통하여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고 경영공개로 통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

□ 주요 정책

- 공기업 진단을 통하여 공익성과 독점의 필요성이 낮은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
- 공기업으로 잔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 강화 추진
- 공기업으로서의 의무적 서비스 제공 부문과 일반 경영 부문의 성과를 분리하여 경영하는 시스템 도입 추진
- 공기업 경영진, 감사 및 이사회 인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공개하는 시스템 도입 추진
- 경영실적 및 성과에 대한 완전공개와 함께, 보수와 복지수준의 도덕적 해이 감시를 강화

공직부패의 추방

“부패 없는 공직사회로 선진국가 구현”

□ 현안 진단

● 한국의 부패수준

- 2007년도 국제투명성기구(Transparency International)의 발표에 따르면, 한국은 180개국 중 43위.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임

● 공직사회 부패척결의 중요성

- 건전한 사회를 지향해야 하며, 공직자들이 이에 솔선수범해야
-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선진사회문화 토대 구축에 필수적
-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
-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구현

□ 비전과 전략

● 부패감시 기능 확대

- 내부통제 및 자체감사역량강화의 필요한 시점임

●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구조 개혁

- 행정정보공개 확대

● 공직자 윤리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

- 부정부패에 연루될 경우 사회적 죄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함

● 부패행위 적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패통제체제 확립

- 다양한 부패통제시스템 기반 구축
- 부패의 사전예방과 사후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법제화
- 엄정한 법 및 제도 집행을 위한 전략 개발

● 부패의 사전예방과 사후처리 강화

- 부패감시 기능을 강화하고, 적발된 비리와 부패사건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반부패감시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할 것임
-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, 각종 입법의 조속한 통과, 합리적 개정 등을 통해 법제도의 체계화를 이루어 가겠음
- 고위공직자의 윤리의식 및 반부패 솔선수범이 중요하므로,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, 사전검증시스템을 강화

□ 주요 정책

● 반부패전담기구의 기능 강화 및 조사권 부여

- 개헌 시 부패방지위원회를 독립헌법기관화
 - 검찰과 경쟁중첩적인 공직부패수사권 부여 및 국가청 럽위의 연구조사기능 흡수
 -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
 - 공직부패 수사

● 반부패를 위한 각종 입법을 강화

-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도입
- 로비스트공개법안 제정
-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법을 도입
 - 부패행위를 하거나 정부방침을 위배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정부 피해 액수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는 법 제정 검토

● 부동산백지신탁 제도도입 및 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강화

-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(blind trust)제도가 주식만 가능한데, 부동산백지신탁까지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부동산투기를 원천 봉쇄
- 고위공직자에 대하여는 변칙 상속 및 증여, 미등기 전매 등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안도 철저히 심사 강화
-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,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권 강화

●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 강화

- 행정 · 입법 · 사법 전반에 걸쳐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기준을 제시하는 관련법 제정함
-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, 대통령 주변과 친인척이 관련된 부정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함

●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

- 현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상을 중앙선관위원장, 금감위원장,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확대

감사원 개혁

“감사원의 독립성 확대와 전문성 제고”


□ 비전과 목표

- **감사원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**
 -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주는 대신 이에 걸맞은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
- **감사원에 대한 피감사기관의 체감 개혁도 향상**
 - 혁신 동기 부족과 감사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답보 상태인 감사원 혁신을 지속 추진

□ 주요 정책

- **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거나, 입법, 사법, 행정과 독립된 제4부로 전환**
 - 헌법 개정시 감사원의 독립방안을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규정
- **감사원의 인력 전문화와 인사 혁신 추진**
 - 기존의 행정·회계 중심의 감사인력을 정보화·과학화된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고 전문성을 강화
 - 감사원이 일반 국민과 피감사기관들에게 고객평가를 받도록 하고, 이를 기관평가와 부서별 인사 자료로 활용
- **회계감사 아웃소싱 확대**
 - 회계감사에 대한 민간회계법인으로부터 아웃소싱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
 - 단순 회계상 잘못이나 실수보다는 조직적 부정과 비리, 부조리를 발굴하는 전문화된 회계 감사 실시
- **전문영역에 대한 정책감사와 권력기관의 조직적 부패척결 중심으로 감사 중점을 조정**
 - 정부정책과 각종 대형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위주로 감사
 - 검찰, 경찰, 국세청 등의 권력기관과 경제, 언론 등 ‘힘 있는 기관’에 대한 반부패 감사 활동 강화

개헌*

 “선진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
새로운 헌법을 만들겠습니다”

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한 헌법개정 “선진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정”

□ 비전과 목표

-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, 동북아번영을 추구하는 비전을 담은 헌법으로 탈바꿈
- 이를 통해 차기정부에서는 정치·경제·언론 등의 선진화를 통해 세계 모범국가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

□ 추진 배경

- 현 헌법이 민주화 이후 20년간 운영되면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의 불일치, 권력구조의 불합리성 등의 문제 노출
- 장차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에 대비하고, 정치 및 안보·경제·언론의 선진화를 담은 새로운 국가적 틀이 필요
- 정당구조·선거제도를 개편하여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접근을 쉽게 하고 이해관계 집단의 입장을 제도적으로 수렴할 필요
- 반부패를 위한 감시/감찰과 관련된 중첩적 행정구조를 해소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되 내실 있는 반부패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

□ 개헌안(시안) 주요 내용

●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과 선진형 안보체제 추진방안 제시

-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서 평화적 통일 지향
 - ▶ 헌법상 영토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
- 국가보안법(제7조: 찬양·지지·고무·동조)의 위헌성 해소

● 정치권력의 민주화와 지역감정의 해소

-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(제70조)에서 4년 중임(重任)으로 변경하고, 결선 투표제를 도입
- 국무총리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도입
-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,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비중을 확대
- 2년에 절반씩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도입 검토
- 광역정당을 허용하여 지방선거 활성화

- **행정부의 입법제안권 제한**
 - 법률안제출권(제52조) 개정
- **반부패 시스템의 정비**
 - 국정감사(제61조)와 행정감사(제97조)를 일원화